

몽골 정책자문사업 사전실무회의 참가 국외출장 결과보고

I. 출장개요

1. 출장 목적

-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사업(몽골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자문)에 대한 협약체결('14.4.11)에 따라 몽골 노동부와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세부추진사항 및 일정 등 협의

※ 관련근거 :

- 1) 개발협력지원팀-660(2014.03.31)호 ('14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정책자문사업 재위탁 승인)
- 2) 글로벌HRD지원팀-605(2014.04.02)호 ('14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정책자문사업 재위탁 기관 선정 알림)

- 아울러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공단-몽골 노동부간 이행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서 초안 협의 및 확정

※ 이행협정 체결은 '14. 5월 몽골에서 세미나 개최 시 추진 예정

2. 출 장 자 : 1명

- 국제협력팀 전문직 4급 최 동 식

3. 출 장 지 : 몽골 울란바타르

4. 출장 기간 : '14. 4. 16(수) ~ 4. 19(토) [2박 4일]

5. 주요 수행사항

- 공단 및 몽골 노동부 관계자 실무회의 참가를 통한 몽골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 정책자문사업 세부추진사항 협의
- 정책자문사업 추진을 위한 공단-몽골 노동부 간 이행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서 초안 마련 및 확정

- 몽골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(안) 및 하위규정(안) 기초 정보 자료 습득
- 출장 관련 예산은 고용부 선급금 지급(4월 말)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실시
- 기타 관계자 면담 및 노동부 등 기관방문(필요시)

6. 세부일정

일 정	내 용
○ '14. 4. 16(수)	○ 출국 (인천 → 필리핀 마닐라)
○ '14. 4. 17(목)~4. 18(금)	○ 공단-몽골 노동부간 사전실무회의 개최(MOL) - 양기관 참가자 소개 - 고용부 협정 의향서 초안 수정 및 확정 - 공단 정책자문사업 추진사항 소개 및 세부사항 협의 - 정책자문사업 세부사항 협의 - 공단의 이행협정(IA) 초안 수정 및 협의 ○ 세미나 개최 장소 확인 및 산하기관 방문
○ '14. 4. 18(금)~4. 19(토)	○ 귀국 (필리핀 마닐라 23:40 → 인천 04:20)

II. 출장 수행사항 세부내용

1. 몽골 정책자문사업 사전회의

가. 일시 : 2014. 4. 17(목) ~ 4. 18(금)

나. 장소 : 몽골 노동부 노동관계정책협력국 회의실

다. 참석자

- 한국측(1명) :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과장 최동식
- 몽골측(5명) : 몽골 노동부 노동관계정책협력국 국장 및 감독관 3명,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1명 등

* 국장(Director) : Ms. Baasansuren ALIMAA

라. 회의 주요내용

- 몽골 노동부 노동관계정책협력국 국장은 한국대표단을 환영하며 몽골 정책자문사업 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몽골측 참가자를 소개
- 한국측은 몽골 정책자문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우호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하고 소개함
- 공단에서 수행한 기존의 2012년 필리핀 및 2013년 미얀마 산업안전 보건분야 정책자문사업에 대한 설명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몽골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등 설명
- 한국 고용노동부 및 몽골 노동부간 협력 의향서 내용 협의
 - 한국 고용노동부-몽골 노동부간 협력사업 의향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
 - 1번부터 3번까지 한국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몽골의 노동부 간 산업안전보건관련 정책자문사업, 기술자문 및 초청연수 등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.
 - 4번부터 5번까지 한국의 장애인고용공단과 몽골 노동부 및 인구 개발사회복지부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몽골 노동부가 아니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몽골 노동부가 대표로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이 불가.
 - 효력 및 유효기간 등은 2014년 협력사업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 - 기타 한국 고용노동부 차관의 재방문 및 체결 일자등에 대한 논의 : 의향서는 서면으로 체결할 예정이며, 체결 일자는 세미나 개최시 하는 것으로 협의.
-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상황 및 실태 조사

-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 개정 계획
 - 1) 산업안전보건법 : 2014년 7월까지 국회 상정 예정
 - 2) 안전보건관련 하위규정 : 2016년 까지 130여개의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개정
- 2008년도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만족
- 현재까지 1번의 개정을 실시하였으나, 급변하는 몽골의 산업안전 보건 환경에 대응하고자 다시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, 현재 몽골 노동부 차관의 책임하에 약 22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음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
 - 1)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선임 및 자격
 -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교육 등을 통한 능력 개발 등에 대한 조항 삽입
 - 세미나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와 자격 기준등에 대한 내용 요청
 - 2) 분야별 안전보건 업무를 명시
 - 정부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.
 - 3) 작업환경에 대한 감독관의 역할
 - 몽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정책등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감독권한은 국가전문감독원(GASI)에서 실시하고 있음.
 - 산안법 상에 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가전문 감독원 감독관의 역할을 명시

4) 정부 부처별 안전보건위원회 설립

- 광업부, 건설교통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.
-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며, 노동부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자 함.
- 이를통해, 정부 기관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, 사업장의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
※ 현재 몽골 국가전문감독원(GASI)의 조직이 변경되고 있으며, 각 부처별 안전보건 관련 부서에서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5) 위반 사업장에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 강화

-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형벌규정이 있으나, 추가적인 위협 등으로 인해 5가지 정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검토후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한 삭제를 준비 중

6)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비 지출 비율 증가

- 현재 몽골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지출의 1%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5%로 증가하고자 함.

○ 공단의 몽골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자문사업 의의 및 세부추진방안 내용 설명

- 사업의 배경, 목적,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
- 공단-몽골 노동부간 협정 체결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2014년 실시중인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자문사업의 설명
- 사업예산, 수행 기간 및 수행 범위 등 설명

○ 공단 및 몽골 노동부(노동관계정책협력국)간 이행협정내용 협의

- 세미나 개최

1) 일정 : 2014년 5월 12일~16일 개최 합의

2) 참가자 :

- 한국측 : 분야별 전문가 등 5~8명 참석
- 몽골측 : 안전보건 관계자 약40~50여명 참가

3) 역할 및 비용분담

- 한국측 : 한국대표단 국외여비 및 한국 현황발표
- 몽골측 : 회의장소 및 통역사 섭외, 교통편 및 몽골현황 발표

- 초청연수 개최

1) 일정 : 2014년 6월 9일~20일 중 7일간 개최 합의

2) 참가자 :

- 몽골측 : 산안법 개정 관계자 약 6명 참가

3) 역할 및 비용분담

- 한국측 : 몽골대표단 국외여비 및 기타연수 제반 사항
- 몽골측 : 몽골 대표단 몽골내 이동 및 보험료 등

4) 기타 : 추가적인 참여자 발생시 몽골측에서 비용 부담.

- 전문가 파견

1) 일정 : 2014년 9월 마지막주 개최 합의(몽골 안전보건행사시
공단 참가자 초청)

2) 참가자 :

- 한국측 : 분야별 전문가 등 5명 참석
- 몽골측 : 산안법 개정 관계자 약 22명 참가

3) 역할 및 비용분담

- 한국측 : 한국대표단 국외여비 등
- 몽골측 : 회의장소 및 통역사 섭외, 교통편 제공

4) 기타 : 하위규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파견 요청.

- 최종 평가회의 개최

1) 일정 : 2014년 11월초 개최 합의

2) 참가자 :

- 한국측 : 분야별 전문가 등 5명 참석
- 몽골측 : 산안법 개정 관계자 약 6명 참가

3) 역할 및 비용분담

- 한국측 : 한국대표단 국외여비 등
- 몽골측 : 회의장소 및 통역사 섭외, 교통편 제공

4) 기타 : 필요시 홍보 등 추진.

○ 기타 정책자문사업 업무 협의

- 몽골 노동부 명의의 정책자문사업 요청 공식서한 요청
- 정책자문사업의 몽골측 예산 확보
 - 1)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않음
 - 2) 차기년도 정책자문사업 실시시 조기 예산확보 노력 경주

2. 몽골 정책자문사업 개최장소 확인 및 산하기관 면담

가. 일시 : 2014. 4. 18(금)

나. 장소 : 몽골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 등

다. 참석자

- 한국측(1명) :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과장 최동식
- 몽골측(2명) : 몽골 노동부 노동관계정책협력국 감독관 1명, 국제협력 담당 사무관 1명 등

라. 주요 수행 내용

○ 직업건강연구센터 면담

- 일시 : 2014. 4. 18(금) 13:00~14:00
- 장소 : 몽골 노동부 회의실
- 주요 내용 :
 - 1) 몽골 노동부 산하 직업건강연구센터 조직 및 연혁 등 소개
 - 2) 작업환경연구실 소개

- 작업환경, 안전, 위생과 관련한 평가
- 유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

3) 직업병연구실 소개

- 건강검진, 진단 등 실시

○ 노동연구원 방문

- 몽골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 세미나실 확인

○ 몽골 근로자 파견집중국 방문

- 해외 근로자 파견국 및 회의장 등 방문 확인